

한국정보과학회 연구그룹 설치규정

제1조(목적)

기존 연구회에서는 다룰 수 없는 새로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독립 연구회로 신설할 만큼의 규모를 갖추지 못하는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로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연구그룹의 국문 명칭은 'OOO 연구그룹'으로 하고, 영문 명칭은 'OOO Research Group'으로 한다.

제3조(임무)

연구그룹은 새로 발생하는 연구 분야를 발굴·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전문분과 연구회로 발전시켜, 본 학회가 정보과학 분야를 국내외적으로 선도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제4조(설립)

연구그룹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전문분과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5명 이상 정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
2. 연구그룹의 국·영문 명칭,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운영 및 활동 계획, 대표자 연락처 등이 기술된 연간 활동계획서

제5조(의무)

연구그룹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매년 말에 그 해 활동 실적과 다음 해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다.
2. 연구그룹 활동 기간 중 최소한 1회 학회지 특별 호를 기획하여 연구그룹 주제 관련 기사를 투고한다.

제6조(평가)

매년 연말에 그 해 활동 실적과 다음 해 활동 계획서를 토대로 연구그룹으로서의 존속 및 지원 여부를 재승인 받는다.

1. 재승인 여부는 분과발전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제7조(지원)

학회는 매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운영 회의비를 지원하며, 회의비의 지원여부는 분과발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8조(회원자격)

본 학회 회원은 누구나 관심 있는 연구그룹에 소속할 수 있다.

제9조(해산)

1. 연구그룹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연구그룹의 대표자는 즉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연구그룹 활동이 부진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연구그룹을 해산시킬 수 있다.
3. 연구그룹의 존속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